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철성 위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박철성 위원입니다.

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

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
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
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한
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,

재난 시 예보·경보·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, 위원장 직급 상향 및 당연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